# 서울특별시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 2147

제출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 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#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,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·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시설로서, 우리 시가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나.
- 나. 수탁기관의 의무불이행으로 위수탁 협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거 현재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자 함
- 다. 수련관 운영방식에는 시 직접운영, 민간위탁, 자치구 위임 운영 등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

현재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구로청소년수련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, 활용 가능한 인적·물적 자원 및 노하우를 겸비하고 있는 청소년 전문단체를 공모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,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부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  - 민간위탁 추진근거
    - 청소년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   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    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  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같은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제1호
  -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    -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시설로, 2016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진로직업·창의적 체험활동 등 수련관을 이용한 학교연계 수업과 방과 후 활동 등이 대폭 증대하였으며.
    - 특히, 구로구는 최근 다문화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2016년 기준 다문화· 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, 다양한 청소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수적임
    - 이에 청소년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,
      -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, 지방자치단체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로서,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이 소수에 불과하고, 지역 내 전문 민간단체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직영을 하고 있지만 전문성 및 이용률 저하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가 있음
    -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은 규모 및 필요 인력 등에 비추어 직영으로 전환시 인력충원, 조직개편,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과 재정부담 증가의 우려가 있음

- 또한, 과거 '07~'13년 6년간 5개 수련관(문래, 강북, 금천, 마포, 화곡)을 자치구에 위임 운영한 바 있으나 '12년 시의회에서 전문성 부족, 비효율적 운영 등을 지적하여 사무위임을 해지한 사례가 있음
- 따라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, 중도입국, 저소득층 등 다양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할 수 있고,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

#### 다. 위탁사무 내용

-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·운영
- 청소년의 신체적·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
-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 상담사업
- 학교,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
- 청소년수련관 관리·운영(시설물, 장비 등 포함)
-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# 라. 위탁시설 개요

○ 소 재 지 :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

○ 개관일자 : 2002. 6. 1.

○ 시설규모 : 연면적 4,986m²(지상 4층, 지하 2층)

○ 지원시설 : 수영장, 체육관, 소극장, 휴카페, 프로그램실 등

○ 이용대상 : 청소년 및 시민

#### ○ 위치도



### 마. 민간위탁기간

○ 3년 (2018년 2월 ~ 2021년 2월)

### 바. 수탁자 선정방식

○ 공개모집

### 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○ 소요예산 : 3,016백만원('17년)

- 산출근거
  - 인건비 565백만원, 물건비 675백만원, 경상이전 115백만원, 자본지출 642백만원, 사업비 750백만원, 사업외 지출 224백만원, 예비비 등 45백만원

## 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

○ 재위탁(공모)으로 해당사항 없음

#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청소년기본법 제18조(청소년시설의 설치·운영)
  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· 운영하여야 한다.
 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.
-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(수련시설 운영의 위탁)
  -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·운영자는 수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  -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  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: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- ※ 작성자 :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시설팀 김진영 (☎2133-4121)